

전주지방법원 2021. 5. 4 선고 2021가단79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5. 4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1. 6. 12. 접수 제118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. 6. 12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유재광

별지